	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1-36		
		제정일	2019. 04. 12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4	관리부서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부의 「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」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구성) 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이하 '사업'이라 한다) 전담조직으로 "혁신지원사업단"(이하'사업단'이라 한다)을 두며, 사업단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사업단에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팀을 둘수 있다.

②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사업단장은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한다

제3조(역할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・관리・지원
2. 사업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 책정
3.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
4. 사업 계획 및 결과, 운영실적의 보고
5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
6. 사업 자체평가 보고 및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・시행
7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8.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
9. 그밖에 사업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

제4조(대학혁신위원회)①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직원, 본교재학생, 외부인사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.

1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이 보직교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대학 자체투입재원 및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
2. 자율혁신계획의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
3.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유기적 관리 및 운영
4. 대학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회계 모니터링
5.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

	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1-36		
		제정일	2019. 04. 12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4	관리부서	기획처

6. 성과관리 및 규정(지침)마련 등 사업관리
7. 그 밖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직원, 본교재학생, 외부인사를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 한다.

1. 위원장 및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2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사업성과 및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사업 추진 사전 자체평가, 중간 자체평가, 최종 자체평가 시행
3.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 추진실적 분석
4. 자체평가 개선사항 피드백 및 결과 환류
5. 그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혁신위원회,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개최하고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이 주관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7조(성과관리) ① 관리부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성과관리전담부서는 주기적 또는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성과지표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자체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 자료수합
3. 세부 사업별 프로그램의 실적 및 성과 자료 수합
4. 수합된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
5. 성과평가 지원
6. 기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제8조(외부평가)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, 혁신지원사업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	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1-36		
		제정일	2019. 04. 12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3/4	관리부서	기획처

제9조(사업비 집행 및 사업비관리위원회)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② 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의 「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」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및 본 대학 예산·회계 규정과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한다.
③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④ 혁신지원사업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전문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학생모니터링단) ① 수요자 관점에서 혁신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모니터링단(이하 '모니터링단'라 한다.)를 둔다.
② 모니터링단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모니터링단은 다음의 각호의 기능을 한다.
1.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운영 및 성과 모니터링
2. 사업계획 및 운영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환류를 위하여 모니터링단 활동운영을 위한 장학금 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⑤ 사업단장은 사업비 집행 실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업비관리위원회를 둔다
⑥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교내 교직원으로 구성 한다.
1.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2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⑦ 사업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.
1. 사업비 집행 실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
2. 기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지역사회 모니터링단) ① 수요자 관점에서 혁신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모니터링단(이하 '모니터링단'라 한다.)을 둔다.
② 모니터링단의 위원장은 교직원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모니터링단은 다음의 각호의 기능을 한다.
1. 지역사회 현황 파악 및 산학관 연계방안 수립
2.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④ 모니터링단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	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	문서번호	3-1-36		
		제정일	2019. 04. 12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4/4	관리부서	기획처

1.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에 관한 사항
2. 사업 프로그램 운영 개선 의견 및 요구도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하되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